

강원도의회사무처 청사방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

강원도의회사무처 건물 내·외 주요 시설물 및 청사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 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06월 1일

강 원 도 의 회 사 무 처



1. 설치목적: 시설안전 및 청사방호, 화재예방 등
2. 관련근거
 - 가.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 - 나.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 - 다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제한)
 - 라.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)
3. 시행기관: 강원도의회사무처
4. 공고방법: 강원도의회홈페이지(<http://www.council.gangwon.kr>)
5. 공고기간: 2022. 06. 1. ~ 2022. 06. 20.(20일간)
6. 설치장소

지역명	설치장소	설치대수	설치목적
춘천시	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(신관 5층)	2	시설안전 및 청사방호 등

7. 촬영범위 및 시간 : 설치장소 주변 및 24시간 실시간 촬영

8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직접방문, 우편, FAX 등의 방법으로 강원도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(미디어홍보팀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간 : 2022. 06. 1. ~ 06. 20.(20일간)

나. 제출내용

- 1)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- 3) 제출방법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 - 방 문 :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
강원도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
 - 우 편 :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
강원도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(미디어홍보팀) (우)24266
 - 팩 스 : 033)249-5023
- 4) 제출서식 : “붙임” 참조
- 5)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9. 참고사항

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사무처(033-249-549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